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인용 조문 개정(제2조제1호, 제3조제2호)

「주택법」 전부개정(2016.1.19)에 따라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제5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재설정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